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2호 2019. 4. 4.(목)

## 조 례

남해군조례 제2374호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
남해군조례 제2375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남해군조례 제2376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남해군조례 제2377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17
남해군조례 제2378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1

##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51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4
남해군규칙 제1152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1

## 고 시

남해군고시 제2019 - 41호	도로명주소 고시	36
-------------------	----------	----

## 공 고

제2019 - 466호	남해군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0
제2019 - 469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58
제2019 - 470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60
제2019 - 490호	남해군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62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74호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과 농어촌 관광발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해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31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이용료”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승마장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군수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경감(50%)

-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료 면제

- 가.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승마장 이용료(제7조 관련)

1. 승마장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 기승 (기본료)	어린이	5,000	• 체험시간 : 10분 이내
	청소년	7,000	
	성 인	10,000	
쿠폰 회원 (10회)	어린이	120,000	• 기준 : 1회 기승 30분 이내 • 쿠폰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청소년	180,000	
	성 인	250,000	
월 회 원 (주 3회이상)	어린이	200,000	• 기준 : 1일 1회 기승 1시간 이내
	청소년	300,000	
	성 인	400,000	

※ 이용자 구분

- 1)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초등학생
-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로써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
- 3) 성 인 : 만19세 이상인 사람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10분마다 기본료 금액을 추가징수 한다.

남해군 조례 제2375호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급수공사에 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의2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요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중 “하수도 사용료를” 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제4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주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5.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6. 65세 이상 단독수용가
- 7. 수원지 인접 마을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 (제28조 관련)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별	사용 단계별(m <sup>3</sup> )	요금 (원)			
구 경 (mm)	요 금 (원)						
13 20 25 32 40 50	1,808 5,083 8,164 14,905 24,482 37,536	가정용	1~10	535			
			11~20	642			
			21~30	749			
			31~40	856			
			41~50	963			
			51이상	1,070			
			75 100 150 200	62,627 106,786 168,290 240,129	업무용	1~20	685
						21~50	824
51~100	952						
101~300	1,091						
		영업용	301이상	1,231			
			1~30	974			
			31~50	1,166			
			51~100	1,359			
		육탕1종			101이상	1,552	
					1~200	803	
					201~300	963	
					301~500	1,124	
		육탕2종			501이상	1,284	
					1~300	1,294	
					301~500	1,423	
					501~1000	1,615	
			1001이상	1,840			

남해군 조례 제2376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 를 “「하수도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5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은 삭제한다.

나. 지하수 이용량 외의 하수 배출량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출수 신고량

제13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6조” 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6의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남해군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아래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단계별 (m <sup>3</sup> /월)	요금(원/m <sup>3</sup> )		
			분류식 지 역	합류식 지 역	
가 정 용	1 ~ 10	70	70	-	
	11 ~ 20	80	80		
	21 ~ 30	100	100		
	31 ~ 40	110	110		
	41 ~ 50	120	120		
	51 이상	140	140		
업 무 용	1 ~ 20	110	110		
	21 ~ 50	130	130		
	51 ~ 100	150	150		
	101 ~ 300	180	180		
	301 이상	200	200		
영 업 용	1 ~ 30	130	130		
	31 ~ 50	150	150		
	51 ~ 100	180	180		
	101 이상	200	200		
옥 탕 용	1종	1 ~ 200	130		130
		201 ~ 300	170		170
		301 ~ 500	200		200
		501 이상	250		250
	2종	1~300	160		160
		301~500	180		180
		501~1000	220	220	
		1001이상	250	250	
산 업 용	1 m <sup>3</sup> 당	140	14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 2. m<sup>3</sup>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영 제22조제3항)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 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100리터	1,697원	100원	1,797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427원	750원	18,177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55원	100원	1,355원

- ※ “수집·운반” 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해당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없 음

남해군 조례 제2377호

##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영 별표 2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방법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협의로 정한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3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
  - 2. 위촉직 위원 :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대표,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전문가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1. 영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수당은 해당 월의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78호

##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5.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6. “식재료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농번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리원 인건비, 식재료비, 연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농업인과 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급식인원이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6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이 있으면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9조(마을공동급식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마을공동급식 사진, 급식경비 집행 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마을공동급식 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1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수도 사용자가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동이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동이체 요금은 매월 말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제20조 제1항 관련)

###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신규( ) 변경( ) 해지( )

접수일자		소 장	
		팀 장	
접수번호		담당자	

수 용 가	성 명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업 종	
	수용가번호		가구수	
감면 대상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구주(1~3급)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단독수용가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남해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3. 장애인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제20조 제1항 관련)

**학교시설 등 요금감면신청서**

신규( ) 변경( ) 해지( )	접수일자		소 장	
	접수번호		팀 장	
			담당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

시설내역	시설명		성명	
	주소		연락처	
	수용가번호		수도전 소재지	
	수용가번호		수도전 소재지	
	수용가번호		수도전 소재지	

업종	대표업종 :
----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정용은 제외)

[별지 제17호서식] (제21조 제4항 관련)

(앞면)

### 자동이체신청서 (기관용)

신청구분	지로번호	요금종류	납부자번호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해지	6 1 0 2 8 8 9	상하수도 요금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계좌주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생년월일, 계좌주명,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은행 등 금융회사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생년월일, 계좌주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금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약관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계좌주명 : 인 (서명)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결과 통지 안내]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1. 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 동 이 체 약 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이체서비스(이하 “자동이체” 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와 (기관명)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기관명)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기관명)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 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기관명)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관명)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기관명)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기관명)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신청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기관명)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 식별정보,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제12조(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 규칙 제1152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14호 서식]

###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소			상호		
	성명		업태		전화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15호 서식]

<b>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b>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성명		생년월일	
--------	--	------	--

주 소		상 호	
-----	--	-----	--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일 월	환부이자	
						일 시	금 액
과 오 납 합 계 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입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  
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 <참고> 1. 과오납입금은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별지 제16호 서식]

<b>공공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b>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남해군수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통장계좌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수 신	남해군수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번호 : _____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div>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2.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 신고량 확인
3.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조사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93 외 3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68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4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93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34-2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직장리 478-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2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498-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1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287-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31-27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26-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29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72-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23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4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33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인현리 5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리로 55-45	20090427	남해본성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노량리 324	경상남도 남해군 살천면 노량로 198-11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하부에 노출된 다리가 생길 것을 예언하여 생긴 지명이라는 설이 있음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125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387	20090427	두곡(전통, 정동, 쇠를 불리던 곳)과 양지(산을 등지고 앉은 마을의 좌가 정남)를 연결하는 도로임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6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84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 606-16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범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원리 25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199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동천리 10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양회교로 420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1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을리 186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양로 61-39	20090427	초곡(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72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30	20090427	산두곡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15-70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인현리 2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리로 158번길 21-2	20090427	강진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리 2040-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로 198번길 26-36	20091023	남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407-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230번길 14-71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9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2967번길 11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30-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332번길 61-27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간리 307-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안길 49-2	20090427	동부대로 1030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1-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14번길 27-9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076-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번길 25-4	20090427	미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8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4번길 13	20091023	미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자산리 70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 16번길 35	20090427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원리 897-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원로 51번길 33-3	20100915	평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6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3	20090427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043-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47-11	20090427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475-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22번길 16	20090427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경**

연번	지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이조리 1164-4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이조로 10-3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이조로 10-1	20190304	신축에 의한 건물번호 분할
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16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45번길 2-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47	20190301	출입구 변경에 따른 단원번호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등현리 209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해솔길 9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해솔길 52-1	20190307	

**폐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죽산리 90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은로 90	20190313	현장조사에 의한 도로명주소 폐지
2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풍어리 2006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노도길 20	20190309	건축물 대장 없음. 현장 조사 결과 건축물 없음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돌건리 314-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안길 49-1	20190307	현장조사 및 건축물대장상 건물 멸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466호

남해군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목적홀의 대관료를 조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남해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을 남해문화센터로 변경함.
- 다. 운동경기 목적, 집회기타의 목적으로 대관신청을 허용해 온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함.
- 라. 평일오전(09:00~13:00), 평일오후(13:30~18:00), 평일야간(18:30~23:00)로 구분해 온 남해군 작은 영화관 목적외 사용가능일시,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대관가능일시, 공연연습장 사용일시를 평일주간(09:00~18:00)과 평일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여 각각 변경함.
- 마. 문화체육센터 사용시간 최소단위를 현행 평일오전(4시간), 평일오후(4시간 30분), 평일야간(4시간 30분)에서 향후 평일주간(9시간), 평일야간(4시간) 내 2시간으로 변경
- 바. 영화관 목적 외 사용료를 현행 평일오전 4만5천원, 평일오후 5만원, 야간 6만원에서 평일주간 4만5천원, 야간 5만원으로 변경함.
- 사.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대관료를 사용시간 단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현행 토요일·공휴일 오전 10만원, 토요일·공휴일 오후 12만원, 토요일·공휴일 야간 13만원, 평일오전 8만원, 평일오후 9만원, 평일야간 10만원에서 토요일·공휴일 주간 6만원, 토요일·공휴일 야간 7만원, 평일주간 5만원, 평일야간 6만원으로 변경함.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4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27,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전화 055-860-8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체육센터” 를 “문화센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센터” 를 “문화센터” 로, “남해문화체육센터” 를 “남해 문화센터”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일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 2. 야간(영화관의 휴무일에 한정함) : 18:00부터 22:00까지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다목적홀의” 를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에” 를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중 “문화체육센터” 를 각각 “문화센터” 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사용일시의 사용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일 주간 09:00~18:00 ( : ) ~ ( : )	평일 야간 18:00~22:00 (단, 영화관의 휴무일에 한함) ( : ) ~ ( : )
------------------------------------	---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중 사용일시의 사용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09:00~18:00 ( : ) ~ ( : )	야간 18:00~22:00 ( : ) ~ ( : )
---------------------------------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u>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문화체육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분야의 수요 충족과 체력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문화센터 ----- ----- ----- -----.</p>
<p>제2조(위치 및 명칭) ① 남해군 문화체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남해문화체육센터”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위치 및 명칭) ① ---- 문화센터 ----- ----- ----- ----- “남해문화센터”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목적 외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영화관을 목적 외 사용가능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평일 오전 : 09:00부터 13:00까지</p> <p>2. 평일 오후 : 13:30부터 18:00까지</p> <p>3. 야간(영화관의 휴무일에 한정함) : 18:30부터 23:00까지</p> <p>② ~ ③ (생략)</p>	<p>제11조(목적 외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 -----</p> <p>1. 평일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p> <p>2. 야간(영화관의 휴무일에 한정함) : 18:00부터 22:00까지</p> <p>3. &lt;삭 제&gt;</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다목적홀의 대관 신청 등) ① 다목적홀의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다목적홀 대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다목적홀의 대관 신청 등) ①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다목적홀 대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용시간 및 대관료) ① 다목적홀</p>	<p>제19조(사용시간 및 대관료) ①-----</p>





















[개정 전]

[별표 1]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기준

1. 영화관 목적 외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영화관 휴무일	유 료 입장시 수입액의 20% 징수	비 고
	오전	오후	야간		
공연	45,000	50,000	60,000		

2.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난방	냉방료	1회	40,000	
	난방료	1회	35,000	
무대음향	음향기본	1회	10,000	마이크기본(2개) 추가시 개당 유선 2,000원, 무선 5,000원
영사시설	간이스크린	1회	10,000	이동식 프로젝터 사용

3. 다목적홀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토·공휴일			평일			유 료 입장시	비 고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운동 경기	65,000	70,000	80,000	55,000	60,000	70,000	수입액의 20% 징수	
집회 기타 의 목적	100,000	120,000	130,000	80,000	90,000	100,000		

4.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난방	냉방료	1회	40,000	
	난방료	1회	35,000	
무대음향	음향기본	1회	7,000	마이크기본(2개) 추가시 개당 유선 1,000원, 무선 3,000원
영사시설	간이스크린	1회	5,000	이동식 프로젝터 사용

5. 공통

※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3:00(4시간)
- 오후 : 13:30 ~ 18:00(4시간 30분)
- 야간 : 18:30 ~ 23:00(4시간 30분)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지라도 1회로 간주한다]

※ 1시간미만 초과 사용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다음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시는 초과사용 불가)



[개정 후]

[별표 1]

### 문화센터 사용료 기준

1. 영화관 목적 외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유 료 입장시 수입액의 20% 징수	비 고
	주간	야간(영화관 휴무일)		
공연	45,000	50,000		

2.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 · 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3. 다목적홀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토 · 공휴일		평일		유 료 입장시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문화 및 집회 기타 의 목적	60,000	70,000	50,000	60,000	수입액의 20% 징수	

4.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 · 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5. 공통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9시간)
- 야간 : 18:00 ~ 22:00(4시간)

[주간, 야간으로 사용료 기준을 분류하며, 사용시간 2시간을 1회로 간주한다]

- ※ 1시간미만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의 사용료 기준으로 가산함. (초과해서 사용하려는 시간대에 사용자가 있을시는 초과사용 불가)

남해군 공고 제2019 - 469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개설공사
-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6번지 외 20필지(붙임 참조)
- 3. 출입기간 : 2019. 4. 19. ~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리		대상	현재	총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남해	남해 북면	265 1	도		15,353	474			남해군				
2	남해	남해 북면	265 6	대		60	3	울산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6, 1001호		강*경				
3	남해	남해 북면	266 16	담		212	205	경남 거제시 아주2로2길 13 203동601호		최*배				
4	남해	남해 북면	268	대		4,724	7	남해파크에비뉴아파트(대지권설정)						
5	남해	남해 북면	266 15	담		162	161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21 101동 1304호		서*수				
6	남해	남해 북면	266 10	창		675	6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21 101동 1304호		서*수				
7	남해	남해 북면	311	담		2,241	193	경남 진주시 남강로1141번길 4-5		수광중합건설				
8	남해	남해 북면	272	담		1,055	18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90-1		박*득				
9	남해	남해 북면	273 1	담		321	38	경남 남해군 남면 상거리 229		하*호				
10	남해	남해 북면	310 4	담		60	55	경남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09-6		박*주				
11	남해	남해 북면	308 2	대		62	2	경남 남해군 남면 상거리 229		박*심				
12	남해	남해 북면	308 5	대		109	87	경남 남해군 남면 상거리 229		박*심				
13	남해	남해 북면	308 3	대		8	2			남해군				
14	남해	남해 북면	308 4	대		163	3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0-27		박*수				
15	남해	남해 북면	308	대		562	174	경남 남해군 실천면 강진로 723		서*영외 1인				
16	남해	남해 북면	306 18	담		162	16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0-27		박*수				
17	남해	남해 북면	304 6	대		226	68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4-2		박*봉				
18	남해	남해 북면	304 5	담		361	5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4길 25 301호		임*순				
19	남해	남해 북면	304 10	대		69	2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4-10		유*점				
20	남해	남해 북면	304 12	대		135	49			남해군				
21	남해	남해 북면	472	담		1,610	182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421		박*경				
22	남해	남해 북면	473 4	담		333	178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173 101동 804호		박*옥				
23	남해	남해 북면	474 2	대		371	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490-5		최*래				
24	남해	남해 북면	474 4	담		112	96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490-5		최*래				
25	남해	남해 북면	305	담		572	6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521		박*경				

남해군 공고 제2019 - 470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한빛그린~남산아파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36-1번지 외 10필지(붙임 참조)
3. 출입기간 : 2019. 4. 10.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편입용 지 조서 집계 표

지 목	국 유 지		사 유 지		합 계	
	필	편입면적	필	편입면적	필 지	편입면적
답			8	940	8	940
대			2	166	2	166
임			1	8	1	8
도	2	202			2	202
천	1	164			1	164
계	3	366	11	1,114	14	1,480

편입용 지 조서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1	남해읍 서번리	491	천	23,653	164		국(국토교통부)		
2	"	336-1	임	36	8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42-20	김희수	640515-2*****	
3	"	336-3	답	7	7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42-20	김희수	640515-2*****	
4	"	337-2	답	15	15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93번길 32-19(부민동3가)	장정애	520126-2*****	
5	"	334	답	417	291	서번리 27-3	장옥신	330925-2*****	
6	"	337	대	845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382 미대하우스텔 302호	김희수	640515-2*****	
7	"	335-2	답	276	108	서번리 323-3	김근표	651117-1*****	
8	"	335-1	대	245	150	서번리 335-1	강대성 외1인	641210-1*****	
9	"	494-2	도	712	32		국(국토교통부)		
10	"	359-9	답	41	18	아산리 970-1 남양아파트 가-408	이운철	600528-1*****	
11	"	359-2	답	214	128	아산리 970-1 남양아파트 가-408	이운철	600528-1*****	
12	"	359-1	답	506	223	아산리 427-2	한연심	310920-2*****	
13	"	360	답	586	15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14-4	임창숙 외 5인	580930-2*****	
14	"	357-2	도	1,403	170		남해군		
합 계				28,956	1,480				

남해군 공고 제2019-490호

## 남해군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농어촌지역의 빠른 노령화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재난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안전관리원의 위촉(안 제3조)
- 다. 안전관리원의 임무(안 제4조)
- 라.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마. 포상금(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4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66조의4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빠른 노령화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안전관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마을 안전관리원” (이하 “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 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위촉받아 안전관리와 안전신고 등 안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안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원의 임무)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재난 예방 및 주민의 안전 도모
- 2.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 신고
- 3.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4.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원에게 과제와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원이 순찰일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안전관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